

문서번호	생활보장과-643
등록일자	2026. 1. 7.
결재일자	2026. 1. 7.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희망복지팀장	생활보장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신은정	정유미	박찬선	권미진	서경현	류규하
협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6년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6. 1.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근거 :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지원금액
 - 2인이하 가구(20만원), 3인 이상 가구(30만원)
- 사업예산 : 15,000천원(구비)
-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및 기타 서비스연계 :洞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6년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사업 추진계획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긴급구호를 적기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거미줄망 보호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이 행복한 복지중구 기반 조성

I

추진근거

- ▶ 『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
- ▶ 『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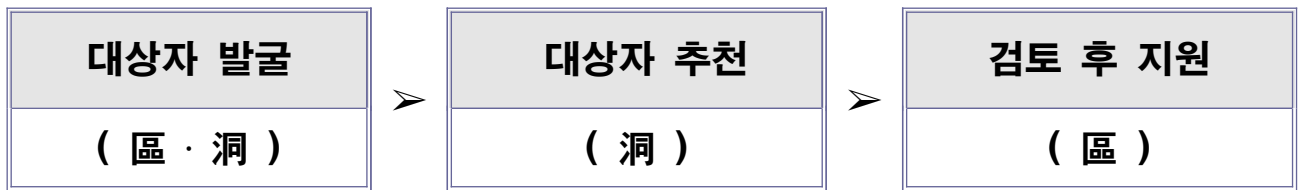
II

추진개요

- ▶ 사업기간 : 2026. 1. ~ 예산 소진 시 까지
- ▶ 지원대상 (조례 제3조)

- ▶ 가구의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 ▶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재산 또는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주택 관리비, 주택임차료 등을 체납하여 주거안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앞서 긴급히 구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지원절차



☒ 추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조사서(별지2호)

- 기타 증빙서류 - 진단서(진료확인서), 본인부담의료비 영수증 등

☒ 지원횟수 : 1회 원칙(단, 특별한 경우가 인정될 시 추가 가능)

☒ 지원기준

-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세대

☒ 지원금액

- 가구원수 2인 이하(200천원), 3인 이상(300천원)

☒ 지원예산 : 15,000천원(구비)

- 지출과목 - 생활보장과, 취약계층보호및복지증진사업추진, 희망복지지원,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301-02

Ⅲ

행 정 사 항

☒ 洞(동)

-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구호 추천
- 긴급구호지원세대 지급내역 기록·유지(별지3호) 및 생활실태 지속관리로 맞춤형 필요 서비스 등 연계지원 조치

☒ 區(구)

- 저소득주민 발굴 및 신청 즉시 검토 · 지원
- 저소득 긴급구호사업 홍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지원대상자 조사서

세 대 주			생년월일				
주 소							
가구원수	명	보장구분			연락처		
주거실태			재산사항		재산총액	천원	
가족사항	성 명	세대주와 관 계	생년월일	직 업	월소득 (천원)	장 애 및 질 병	비 고
월 평 균 소 득	천원						
생활실태							
조 사 자 의 건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긴급구호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추천자 : 동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지급대장

[illegible]